



여 성 가 족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여성가족부령 제210호, 공포일자 '24.11.21.)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보훈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서울특별시(청소년정책과장),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과장), 인천광역시(청소년정책과장),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과장), 울산광역시(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아동청소년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충청북도지사(양성평등가족정책관), 경상남도지사(보육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아동보육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대구광역시(교육청소년과), 대전광역시(여성가족청소년과장), 경기도지사(청소년과장), 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희망인재육성과장), 경상북도지사(교육청소년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교육협력추진단장), 국가유산청,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건축주사보

이경민

사무관

김봉두

청소년활동안 전결 2024. 11. 22.

전과장

김성벽

협조자

시행 청소년활동안전과-3541 (2024. 11. 22.)

접수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세종로)

/ <http://www.mogef.go.kr>

전화번호 02-2100-6266

팩스번호 02-2100-6459

/ yeohae17@korea.kr

/ 대한민국개